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인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45
----------	------

발의년월일 : 2019. 2. 28.

발의의원 : 홍인표 의원

강성환 의원

김성태 의원

박갑상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 충전시설비율에 대한 규정을 현실화 하고, 충전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충전 방해행위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올바른 충전문화 조성과 충전시설의 효과적 활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안 제11조)

나. 충전시설 설치비율 (안 제11조의3)

다. 과태료부과기준 표시 (안 제11조의5)

## 3. 붙임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없음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
2. 시행령 제18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

안 제11조의3제1항의 내용 중 “제18조의5제2호” 를 “제18조의5제2항” 으로 하고, “이상으로 한다.” 를 “이상으로 하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 1기는 완속충전시설 7기로 볼 수 있다.” 로 한다.

안 제11조의3제2항의 내용 중 “이상으로 한다.” 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이 하나의 충전시설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주차단위구획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그 주차단위구획의 수량을 충전시설의 수량으로 볼 수 있다.

안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과태료 부과기준 표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p> <p>① (생략)</p> <p>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p> <p>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p> <p>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다. 문화 및 집회시설</p> <p>라. 판매시설</p> <p>마. 운수시설</p> <p>바. 의료시설</p> <p>사. 교육연구시설</p> <p>아. 운동시설</p> <p>자. 업무시설</p> <p>차. 숙박시설</p> <p>카. 위락시설</p> <p>타. 자동차 관련 시설</p> <p>파. 방송통신시설</p> <p>하. 발전시설</p> <p>거. 관광 휴게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p> <p>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p> <p>나. 기숙사</p>	<p>제11조(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p> <p>①(현행과 같음)</p> <p>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에 따른 시설</p> <p>2. 시행령 제18조의4제2호에 따른 시설</p>

현행	개정안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용) ①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p> <p>③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용) ①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충전시설 1기는 완속충전시설 7기로 볼 수 있다.</p> <p>②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전시설이 하나의 충전시설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주차단위구획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그 주차단위구획의 수량을 충전시설의 수량으로 볼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제11조의5(과태료 부과기준 표시)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 제4항, 제5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p>

## 관계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⑥ 시·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판매시설
- 마. 운수시설
- 바. 의료시설
- 사. 교육연구시설
- 아. 운동시설
- 자. 업무시설
- 차. 숙박시설
- 카. 위락시설
- 타. 자동차 관련 시설
- 파. 방송통신시설
- 하. 발전시설
-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 6. 30.]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9. 18.>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 ② 시·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